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음주 경고문구 표시내용 등 위반 시 제재 신설 등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38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개요	1
II.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9
1.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과음 경고문구 표기 규정	9
2. 음주운전 시 불이익 부과 내용 및 근거	10
3. 주류용기 표시 제도 해외 사례	11
4. 주류용기 표시 제도 현황 및 사례	12
5.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시방법 세부안내	14

I. 개요

1. 제안경위(의안번호 제2207538호)

(가)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9인

(나) 제 안 일 : 2025. 1. 15.

(다) 회 부 일 : 2025. 1.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의 42.3%인 55,007건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고, 누적 7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도 1,070건에 달하고 있음.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주에 관한 경고문구의 면적과 최소크기 기준의 준수율은 각각 22%와 16.7%로 나타났고, 색상 기준의 준수율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표기와 음주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4조제1항).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및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제7항 및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 ③ (생략)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u>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u> 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 ----- ----- ----- ----- ----- <u>다음 각 호의 경고문구</u> ----- ----- ----- ----- -----.
<신설>	1. <u>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u>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⑤·⑥ (생략) <u><신설></u>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의2. (생략) <u><신설></u> <u>1의3.</u> (생략) 2. ~ 4. (생략) ② ~ ⑤ (생략)	2.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⑤·⑥ (현행과 같음)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①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u>1의3. 제8조제7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u> <u>1의4. (현행 제1호의3과 같음)</u>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2. 주요 검토 사항

- 먼저, 음주운전 경고문구 추가 표기에 관련한 사항임.
- 음주로 야기되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에서는 ① 과다한 음주의 건강 위험성 ② 임신 중 음주 시 태아의 건강 위험성에 관한 내용을 주류 판매용기에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 및 관련 고시(참고자료 1)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알코올 1도 이상의 모든 주류 판매용기에는 다음의 3가지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과음 경고문구 내용(보건복지부 고시)>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한편,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바, 음주운전 방지 대책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취소, 일정기간 면허발급 제한, 교통안전 의무교육 실시 및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해마다 약 1만 5,000건 발생하여 매해 150~300명 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음.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부상자 수 및 사망자 수 >

(단위: 건, 명)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9	15,708	295	25,961
2020	17,247	287	28,063
2021	14,894	206	23,653
2022	15,059	214	24,261
2023	13,042	159	20,628

*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상자수는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의 합계임)

- 개정안은 주류 판매용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구를 추가로 표기함으로써 음주자의 경각심 제고를 통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자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 참고로, 미국은 주류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에 해롭다’, ‘음주는 자동차 운전이나 기계 조작 등 능력을 저하시키고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하고, 멕시코와 튀르키예는 ‘미성년자 음주 운전 금지’, ‘임산부 음주 금지’, ‘음주 운전 금지’ 등 세 가지 픽토그램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해외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참고자료 3).
- 한편, 현재 주류 용기에는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부), 「주류면허법」(기획재정부, 국세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약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수의 법률에서 각각 표기 내용을 관할하고 있는바(참고자료 4), 음주운전 경고문구가 추가될 경우 주류 판매 용기에 표기되는

내용이 많아져 가독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그림의 활용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 아울러,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구를 추가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2025. 1. 23.)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겠음.

□ 다음으로, 음주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항임.

□ 현재 표기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제4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음주 경고 문구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며,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제6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정해짐.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1의2]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 1. 표기방법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라고 표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글자의 크기 등 가. 경고문구는 판매용 용기에 부착되거나 새겨진 상표 또는 경고문구가 표시된 스티커에 상표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로 표기

되어야 한다.

나. 글자의 크기는 상표에 사용된 활자의 크기로 하되, 그 최소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7포인트 이상

(2)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이상인 경우: 9포인트 이상

3. 색상

경고문구의 색상은 상표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경고문구의 가독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정한 표시내용과 방법 기준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함으로써 음주 경고문구를 통하여 보다 실효적으로 절주나 음주폐해예방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한편, 개정안 중 경고문구 표시내용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제31조의2제1호)에서는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그 외, 경고문구 표기방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관련 벌칙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표기방법 준수 여부도 음주폐해예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 입법례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특히, 주류용기 2,581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2023년 11월~12월) 주류용기 2,851개 모두 시행규칙 조항 최소 1개 이상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음(참고자료 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용기에 주류의 용도, 용량, 제조장소와 알코올 도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음주운전 경고 문구 추가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표기방법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주류업체 대상으로 표기방법 준수에 대한 공문 발송 및 주류산업협회와 함께 워크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상황으로, 전통주 등 주류 업체 중 소규모 업체가 많고 주류 판매용 용기의 형태가 다양하여 표기방법 준수 등에 대해서는 현행 권고 수준이 적당하며, 표기방법 등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추가될 경우 모든 주류 판매용 용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

【참고1】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과음 경고문구 표기 규정
--------------	--------------------------------------

적용범위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중 알코올분 1도이상의 음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
경고문구 내용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과음 경고문구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표시방법	○ 표기방법 - 사각형 선 안에 표기 - “경고: ”라고 표기 - 경고문구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 글자크기 등 - 상표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로 표기 - 300ml 미만의 주류용기에는 7포인트 이상, 300ml 이상의 주류용기에는 9포인트 이상으로 표기 ○ 색상 - 경고문구 색상과 상표도안의 색상이 보색관계로 선명하게 표기 ○ 글자체 - 고딕체 ○ 표시위치 - 상표하단에 표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의2
표시방법 규정 및 변경	6개월 전에 해당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경과규정	○ 하단의 주류는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 가능 -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주류, -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재검토기한 규정	'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 의무	과음 경고문구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2】	음주운전 시 불이익 부과 내용 및 근거
-------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구 분	내 용	근거 법률
면허 취소시 일정기간 면허 재발급 제한	•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년간 제한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간 제한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2년간 제한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 교통질서, 교통사고와 예방,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법규,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등(교육 내용) • 3~16시간 강의·시청각 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음주운전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음주운전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3】	주류용기 표시 제도 해외 사례
--------------	-------------------------

국가	관련 법령	내용
튀르키예 ¹⁾	Law No. 6487 of 11/06/2013	터키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주류에는 ‘알코올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라는 경고문구와 “18세 이하 미성년자 음주 금지”, “임산부 음주 금지”, “음주 운전 금지”를 나타내는 세 가지 픽토그램이 있어야 함 미성년자 음주 금지 음주 운전 금지 임산부 음주 금지 
멕시코 ²⁾	Mexican Official Standard NOM-142-SSA1 / SCFI-2014 Alcoholic beverages, Sanitary specifications, Sanitary and commercial labeling, 9.3.7.2	알코올 도수 6.1%의 주류에는 경고문구와 함께 3가지 종류의 그림이 개별로 또는 동시에 포함 미성년자 음주 금지 임산부 음주 금지 음주 운전 금지 
미국 ³⁾	Alcoholic Beverage Labeling Act (ABLA) of 1988	“임신 중 음주는 태아에 해롭다”, “음주는 자동차 운전이나 기계 조작 능력을 저하시키고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는 내용 표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⁴⁾	FOODSTUFFS7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 1972, REGULATIONS RELATING TO THE LABELLING OF ALCOHOLIC BEVERAGES	흰색 바탕색에 검은색 글자로, 아래의 경고 문구 중 하나를 표기해야 하며, 경고문구 면적은 주류용기 라벨 전체 크기의 8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음주는 운전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음주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Alcohol reduces driving ability, Don't drink and drive.) - 술을 마시고 길을 걷지 마십시오. 음주는 사망을 초래합니다. (Don't drink and walk on the road, alcohol kills.) - 음주는 부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Alcohol increases your risk to personal injuries.) - 음주는 폭력과 범죄의 주요 원인입니다. (Alcohol is a major cause of violence and crime.) - 알코올 남용은 건강에 위험합니다. (Alcohol abuse is dangerous to your health.) - 술은 중독물질입니다. (Alcohol is addictive.) - 임신 중 음주는 태아에게 해롭습니다. (Drinking during pregnancy can be harmful to your unborn baby.)

【참고4】	주류용기 표시 제도 현황 및 사례
--------------	---------------------------

연 번	주 관 기 관	법 적 근 거	주 요 내 용	규 제 사 항
1	보건 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4항, 제6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2 -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음주로 인한 위험성에 관한 내용 표기	표기내용, 표기면적, 글자크기, 글자색상, 글자체, 표기위치
2	여성 가족부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7항, 제9항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별표7	19세 미만 판매 금지에 관한 내용 표기	표기내용, 표기면적, 글자크기, 배경색상, 글자색상, 글자체, 표기위치
3	기획재정부, 국세청	- 주류면허법 제17조 -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18조 -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주류의 용도 구분 표기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 - 가정용 주류의 경우, “음식점·주점 판매불가” 표기	표기내용, 글자크기, 배경색상, 글자색상* * 해당하는 경우
4	식품 의약품안 전처	-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5조2, 제6조제4항, 별표2, 별표3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품명, 식품유형, 알코올 함량,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내용량, 원재료명, 용기·포장 재질, 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 보관방법**,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열량*** 등 표기 * 탁주 및 약주는 소비기한, 맥주는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해당하는 경우 *** 주류제조자가 자율적으로 표기 **** 주종별 추가 표시사항 별도 규정	표기내용, 글자크기
5	농림축산 식품부	- 원산지표시법 제5조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 -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제3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고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표기내용, 글자크기, 글자색상, 표기위치

연번	주관기관	법적 근거	주요 내용	규제 사항
6	환경부	- 자원재활용법 제14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1조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고시)	분리배출 표기 * 제품·포장재의 종류, 재질 등 표기	표기내용, 표기면적, 도안색상, 표기위치
7	환경부	-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제6항 -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비용기보증금 환불 및 재사용 표기	표기내용, 표기크기, 표기위치, 표기색상, 글자체
8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10조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 등) 표기	-

【참고5】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시방법 세부안내
--------------	------------------------------

□ 모니터링 개요

- (대상) 국내 3대 대형마트(3개 지점) · 편의점(9개 지점) 총 12개 지점
내 판매 중*인 알코올 1도 이상의 주류 * 조사 시점 기준
- (조사시점) 2023년 11~12월
- (조사범위) 전수조사(주류용기 2,851개)
-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1의2](붙임2) 근거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시방법 준수 여부
- (모니터링 결과) 주류용기 2,851개 모두 시행규칙 조항 최소 1개 이상 미준수

□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시방법

- (관련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1의2]
-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시방법 근거 조항 및 내용
 - (제1호)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 ” 라고 표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참고1)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참고1)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과음경고문구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2호)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

- (제2호)

- (경고문구 면적 크기) 상표 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로 경고문구 표기
- (경고문구 글자 크기) 용량이 300밀리터 미만인 경우 7포인트 이상, 300밀리터 이상인 경우 9포인트 이상으로 경고문구 표기

- (제3호) 경고문구의 색상은 상표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참고2)에 있는 색상으로 선명하여야 함

(참고2) 보색대비표

- 보색 : 다른 색상의 두 빛깔이 섞여 하양이나 검정이 될 때, 이 두 빛깔을 서로 이르는 말(표준대국어사전)

〈 보색 대비표 〉



- (제4호) 글자체는 고딕체로 표기

- (제5호)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 상표의 하단에 표기,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